

《 학교기업사업단 》

1. 학칙 개정(안)

가. 제안이유

- 1) 현장적합성 있는 인력양성과 실습을 통한 직업교육과정과 연계(전문대학 특성)로 직접 용역을 창출하여 대학 재정 수입에 기여하고자 함.
- 2) 학교기업은 오프라인에서만 운영하였으나, 온라인몰(전자상거래)을 운영하여 학교기업 및 유관기관 제품 등을 전국적 마케팅 할 뿐만 아니라 ebay와 Amazon, Alibaba 등과 제휴 및 런칭으로 해외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여 대학 재정 수입에 기여하고자 함.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07.8.3.)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와 관련하여 대학이 학교의 시설·인력을 활용하여 물품의 제도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학교기업설치 가능으로, 학교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칙에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 1) 학칙 및 학교기업운영규정에 학교기업의 소재지, 사업종목 및 관련 학과 교육과정을 명시함(단지 학교 기업의 설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서는 안 되고, 개별 학교 기업별로 사업종목, 소재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2) 추가적으로 온라인몰(전자상거래)을 학칙 및 학교기업운영규정에 기재

다. 주요토의과제

라.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41조
③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2) 예산조치 :
- 3) 합 의 :
- 4)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별첨)

【별첨】 학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사업내용) 학교기업은 각 기업의 특성에 따른 사업종목 및 사업내용은 각호에 정한 바와 같다. 1.~5(생략) <u><신설></u>	제8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사업내용) ①----- ----- ----- 1.~5(현행과 같음) ② <u>학교기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한다.</u>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